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
광진구청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: 4개소

○ 신속통합기획(주택 재개발) 예정지 : 1개소(63,963.3㎡)

- 지정기간 :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63,963.3	
서울특별시	광진구	중곡동 232-1 일대	63,963.3	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지역

○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: 3개소(134,892.6㎡)

- 지정기간 :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34,892.6	
서울특별시	광진구	자양동 593 일대	74,127.2	지목 『도로』 한정
		구의동 224-54 일대	22,240.0	
		자양동 663 일대	38,525.4	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3. 공고기간 : 2026. 5. 14. ~ 2026. 5. 28.(15일간)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: 붙임1 및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지번별 허가구역 해당 여부 확인 가능

5. 공람(열람)장소: 광진구청 홈페이지,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

※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
(☎02-450-7764)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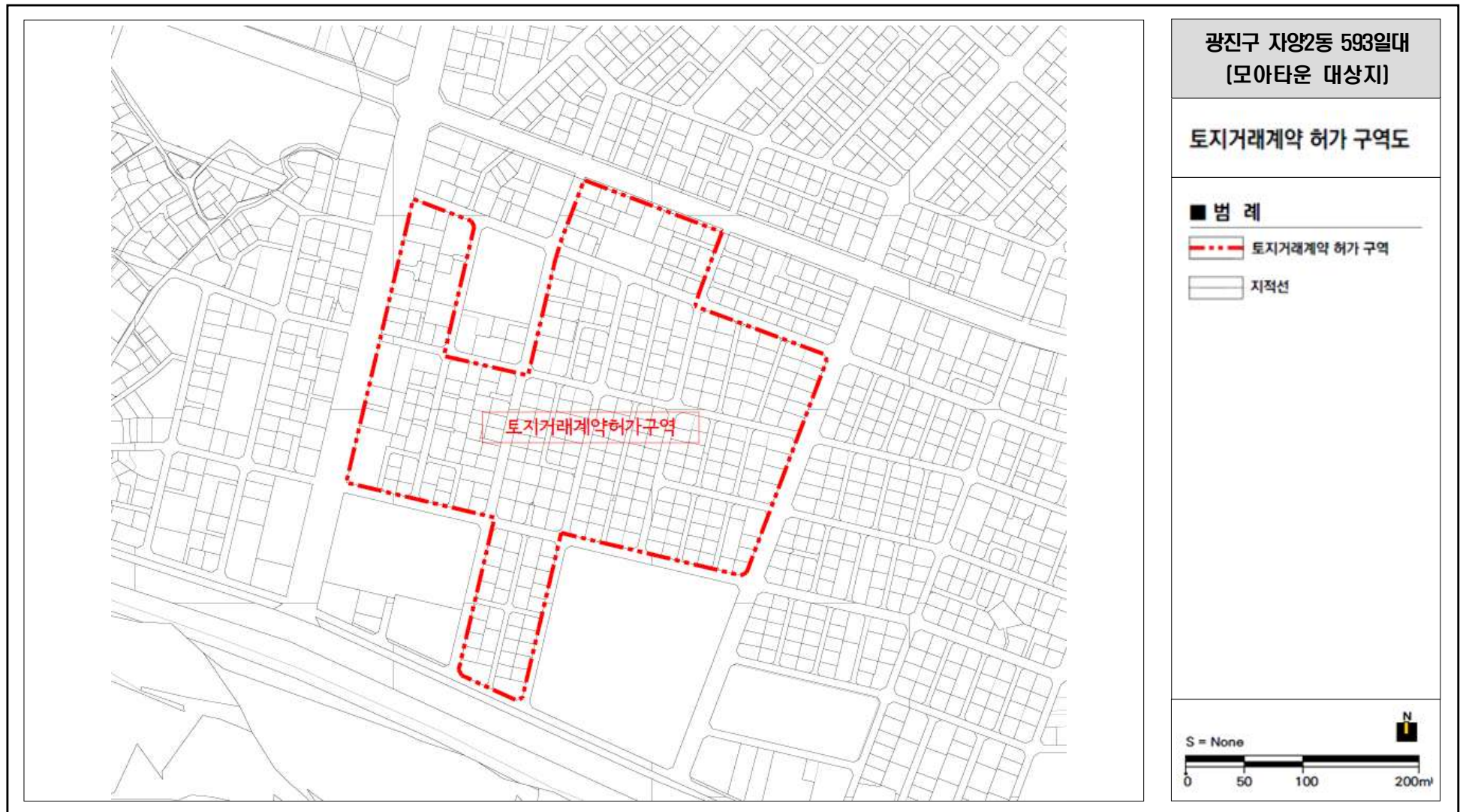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

1. 광진구 중곡동 232-1 일대



2. 광진구 자양동 593 일대



3. 광진구 구의동 224-54 일대



4. 광진구 자양동 663 일대

